

소규모합병 공고

조선내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과 2021년 10월 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 가. 존속법인 : 조선내화 주식회사
- 나. 해산법인 :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

2. 합병방법 : 조선내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을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보통주식 = 1 : 0 (조선내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

4. 합병기일 : 2021년 12월 30일

5. 소규모합병 : 조선내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의 합병은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 2021년 10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1월 1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명부주주 : 2021년 11월 10일까지 조선내화 주식회사 서울행정지원실(02-6966-3104) 제출 (송부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77 조선내화빌딩 10층 행정지원실)
- 2) 실질주주 : 2021년 11월 9일까지(*명부주주보다 1영업일 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단, 제출기한은 거래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증권회사에 문의 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

마.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조선내화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조선내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알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1 년 월 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2021년 10월 27일

조선내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금옥